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4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윤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13. 접수 제1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발생

- 1) D은 2009. 10. 26.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3. 15.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2) 원고는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58691호로 위 대출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28. ‘D은 원고에게 6,399,638원 및 그중 6,194,967원에 대하여 201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10. 15. 확정되었다.
- 3)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21. 5. 3. 기준 23,101,853원 및 그중 5,994,967원에 대한 2021.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당시 D의 재산 상태

-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6.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F, 피고, D(상속지분 각 1/3)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D이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LH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한 상태여서 망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졌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중 1/3 지분이 D에게 상속되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의 병 수발을 들고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주거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 사건 분할협약에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기여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에는 피고의 기여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